

한국 IPG Information

발행 : 2010 년 10 월

한국 IPG 사무국(JETRO 서울센터)

한국 IPG 의 활동

● 세관직원들에게 「한국 IPG」에 대해 설명



< 일시 >

2010 년 9 월 10 일 17:00~

< 장소 >

한국관세사회관

< 협력 >

TIPA : (재단법인 · 무역관련지적
재산보호협회)

한국 IPG 는 한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IPG 의 활동과 일본제품 보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한국 IPG 가 TIPA 에 의뢰하여 실현된 것으로 당일에는 세관직원대상 진위판정세미나가 종료된 뒤의 시간을 활용해 제트로 서울센터의 조건동 주임이 설명을 맡았습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IPG 의 목적과 취지, 네트워크(일본본사와의 관계), 향후 활동 등 한국 IPG 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뒤, 일본기업이 모방피해를 입고 있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일본제품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기업제품의 모방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직원 대상 진위판정 연수 / 참가기업모집

장소 : 인천세관

일시 : 12 월 10 일(금) 오후 1 시~오후 6 시(한 회사당 50 분)

인천세관의 단속직원들에게 기업 담당자들이 자사상품의 진위판정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세관에서의 모방품 단속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위판정방법 전수를 희망하시는 일본계 기업(4 개사 정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사무국 소식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IPG 회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제 4 회 IPG 세미나가 11 월 15 일에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교류회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IPG·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 한국 IPG 의 활동 >

- 세관세미나에서 「한국 IPG」
홍보 1~2p
- 도쿄, 오사카에서 한국지재
세미나개최 3p
- 향후 활동 4p

< IP 를 알자 >

- 한국 IP 뉴스 5p
- 전자자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개시 6~7p
- 포르노와 저작권과 무차별
고소 8p

한국 IPG 회원 등록

[www.jetro-ipr.or.kr/
admin/files/IPG_mem.pdf](http://www.jetro-ipr.or.kr/admin/files/IPG_mem.pdf)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센터 지재팀

전화 / 02-3210-0195

e-mail / jetroiprseoul@gmail.com

榎本吉孝(에노모토·요시타카)

曹 恩実 (조은실)

趙 乾東 (조건동)

池崎麻理絵(이케자키·마리에)

●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 IPG」 설명회 보고

일본기업이 모방피해를 입고 있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일본제품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기업제품의 모방품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세관은 모방품 단속강화를 위해 집중단속과 사이버수사대 운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단속 실적도 향상되고 있다. 한국 IPG로서 감사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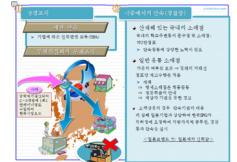
그런데 세관 보도자료를 보면 사치품(고급 명품)에 단속 비중이 집중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단속 실적은 금액 베이스로 집계되기 때문에 세관 단속은 금액 베이스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제품 타입은(제 2 회 한국 IPG 세미나 <사례연구회>에서 소개된 것과 같은)완구나 낚시도구 같은 스포츠용품, 의류 (파스너) 외에 디지털 카메라용 액세서리나 기계부품 등으로, 고급 명품 시계나 가방에 비하면 단가가 싼 경우가 많고 세관 단속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제품이라면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치고 있지만 그러한 품질관리를 거치지 않은 외국산 모방품(일반생활용품)이 한국시장에 나돌게 되어 아이들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짝퉁 노점상에서 가짜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제 2 회 한국 IPG 세미나에서의 설명처럼) 생활용품 등의 일본제품 모방품은 일반 도소매점에 유통되어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입자들은 가짜인 줄도 모르는 채로 (속아서) 사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진품을 제조하는 일본기업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혹은 일본기업·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나아가서는

「일본」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같은 인식을 저하시킨다.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무엇보다도 세관에서의 통관조치에 의해 이러한 외국 모방품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봉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한국시장에서의 모방품 단속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정보교환과 공동대책마련을 위해 일본기업들이 모여 <한국 IPG>로 활동하고 있다.



“저희 집사람도 애들 물건은 안전성이 높은 일본제품을 즐겨 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싶습니다만 일본제품에 대한 정보 입수가 어렵습니다.”

참가한 서울세관의 김 주무관은 「생활용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애들 물건은 안전성이 높은 일본제품을 즐겨 사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일본제품은 한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아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싶습니다만 일본제품에 대해 잘 모릅니다. 게다가 상표권자와 전용실권자 정보 등도 좀처럼 입수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는 정보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상표권자와의 정보교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세관의 박 주무관은 「정부발표는 금액 베이스로 발표되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만을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세관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품목은 모두 감시대상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고가 상품의 상표권자 쪽이 정보제공이나 세관업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세관직원은 가격에 상관없이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놓쳐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상표권자와의 정보교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상품과 상표권자 리스트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모방품은 단속당국만의 노력으로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관·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철저하면서도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IPG에서는 세관의 요청에 부응해 앞으로 일본 상표권자의 정보 수집에 협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적재산보호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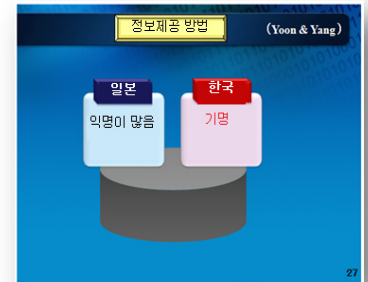
한국의 지적재산보호 실무에 관한 「한국지적재산보호세미나」가 도쿄 (9 월 16 일), 오사카(17 일)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의 상표보호 시 유의점, 특허권침해소송 실무 등에 관한 설명이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제트로가 한국의 모방품 피해 사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일특허법의 차이에 따른 출원 및 소송전략실무>

강연 : 특허법인 화우 강웅선 파트너변리사

일본과 한국의 특허법 차이를 「특허요건」 「출원실무」 「심사실무」 「심판 · 소송실무」 「직무발명」의 순서로 포인트를 정리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 분할출원과 그 원출원이 동일한 특허내용(특허청구 범위)으로 등록되면 양쪽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 한국에서는 일본특허법의 외국어서면출원제도(동법 제 36 조 2)에 해당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역 정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국제출원(PCT 출원)의 경우에도 번역문에 기초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오역 방지를 위한 대리인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 타사의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한국에서는 반드시 기명이 필요하다. 이 점에 관한 실무상 해결책은...
- 한국특허청 및 특허법원이 대전(서울로부터 150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무상 주의점은...
- 분쟁해결 시 권리자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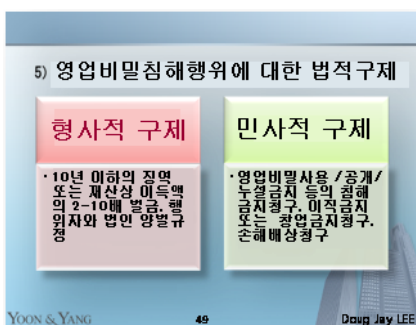


이어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보정에 대한 제한요건 완화” “분할이 가능한 시기의 확대” 등 최근 한국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당일 제공된 자료는 한일 특허법간의 차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모방상표, 모방디자인, 도메인명 부정등록 등에 의한 침해 대책 및 효과적인 해결책>

강연 : 특허법인 화우 이덕재 파트너변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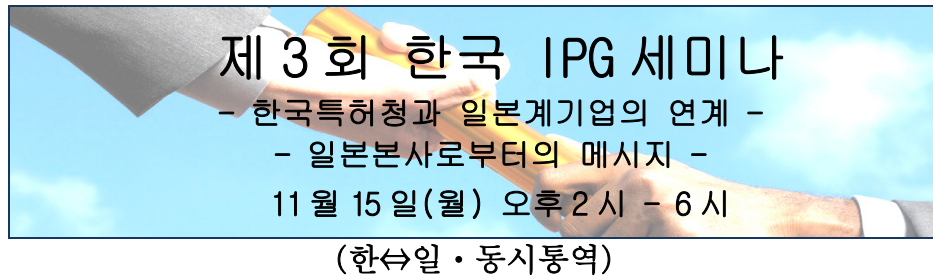
일본기업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모방상표, 모방디자인, 그리고 도메인명의 부정등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기초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대책안과 그 준거법
- 적절한 예방조치와 분쟁발생 시 유의점
- 한국에서 아무런 권리보호조치나 영업활동이 없었다고 할 지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 일본에서도 가능한 한국상표 무료검색방법
- 도메인명 부정등록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
- 한국에서 상품형태를 모방한 제품에 대한 제제조치
- 한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 및 그 실태
- 최근 한국상표법의 개정사항

일본기업이 모방상표로 인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보관 요령과 상대방의 상표출원등록사항을 빈번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권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의 추정규정을 상표권자에게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한 최근 한국법원의 하급심판결(한국에서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손해도 없다고 판단)이 소개되었고, 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도메인명 분쟁 해결과 관련해 신속, 정확하면서도 경제적인 강제조정절차를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되어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 향후 활동



테마 1 : 『한국특허청과 일본기업의 연계강화』

지적재산 분야의 비즈니스장벽에 대해 한국특허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수원 특허청장님을 모셔서 일본기업과 한국특허청의 연계강화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 발족한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모방품의 단속시스템에 대해 일본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과 활용방법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테마 2 : 『본사·지재부가 한국지사에게 보내는 메시지』

- 본사 지재부는 한국지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

일본에서 일본지적재산협회(JIPA)의 대표단(각 업계 지재담당자분들)을 초빙해 각 업계의 지적재산 전략과 모방품 대책 현황에 대해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지사에게 기대하는 것(한국으로부터의 정보발신과 현지대응 등)에 대해 패널디스커션 형식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일시> 2010년 11월 15일(월) 14:00 ~ 18:00 (종료 후 교류회 개최)

시간	내용 (한일동시통역 있음)
14:00~14:15	개회사 / 나가이(長井) · SJC 이사장, 엔도(遠藤) · SJC 지적재산위원장
14:15~15:45 <u>한국특허청과의 연계강화</u>	이수원 한국특허청장 강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활용방법』(가제) / 한국특허청
	『인터넷모방품 단속시스템』(가제) /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15:45~16:00	(Coffee Break)
16:00~18:00 <u>본사·지재부가 한국지사에게 보내는 메시지</u>	일본지적재산협회 고모토 켄지(河本健二) · 부이사장(닛산자동차) 강연
	패널디스커션 (일본지적재산협회 대표단 / 사회 JETRO) 『각 업계의 한국에서의 지적재산전략과 현지사원에 거는 기대』 고모토 켄지(河本 健二)(닛산자동차), 오소노에 켄이치(小園江 健一) (반다이), 요시하라 토시키(吉原 利樹)(도시바), 고마이 신지(駒井 慎二)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
	일본본사지재부 담당자와의 의견교환
18:00 (폐회)	(폐회 후 교류회(참가비: 30,000 원)가 개최됩니다.)

<장소>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 서울가든호텔 2층 무궁화<C>홀

<주최> 한국IPG (SJC지적재산위원회,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서울센터)

<참가비> 무료 (SJC 회원 이외 분들도 많은 참가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 · 신청서는 이곳으로 ➡ JETRO 서울센터 지재팀 홈페이지
(<http://www.jetro-ipr.or.kr/>) 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기입 후 11월 12일(금) 까지 이메일 또는 FAX 로



한국 IP 뉴스

● 50억 원대에 달하는 가짜 명품 밀수입 판매업자를 검거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과는 8월 16일, 중국산 밀수입 가짜 명품가방류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국제시장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조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와는 별도로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 명품 9종, 1,179점(정품 시가 25억 원 상당)도 압수했다. 임대폰을 이용해 사람들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밀수입 업자로부터 상품을 받아놓고 조금씩 판매대에 진열해 놓거나 택배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왔다. 해양경찰은 국내 최대 중국산 가짜 명품 밀수입업자인 김 씨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전문담당수사대가 경찰청에 발족

첨단기술 유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수사할 수사대를 배치했다. 본 청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센터>와 5 군데 지방경찰청(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전문 담당팀>으로 구성되며, 각 지방경찰청에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에 들어간다.

경찰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산업기술 유출사건으로 194건(672명)을 검거하고, 특히 해외유출사건에서는 57건(약 30%)을 검거해 왔다.

● 대학 수업에서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대학이 수업에서 각종 저작물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업목적에 의한 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대학은 수업(온라인강의를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공중송신·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나중에 소정 기준으로 납부한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개인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되는 제도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문화부는 시행을 보류해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상금 기준(안)으로는 각 대학이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개별이용방식)과 정액의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포괄이용방식) 중에서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시킨 범죄조직 적발

부산경남본부세관은 해외유명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등 위조상품 633점, 약 10억 원 상당의 상품을 부산국제시장 등의 지역에서 판매해 온 이 씨 등 3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해온 대규모 탐문수사가 이번 검거로 이어졌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 구매에서 판매까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주위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을 일반 가정집에 보관해왔다. 또한 판매할 때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신분을 감추고 사전에 적발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진품으로 둔갑시켜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에서의 특허권남용실태조사를 개시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IT 분야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특허권남용에 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 분야에서 중요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다국적기업 19개사 및 국내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계약거절사례, 라이선스계약체결 시 자세한 거래조건 등을 파악한다. 서면조사 결과, 법률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해 위반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 한국의 법률 등 개정안 >

-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안) (8월 31일)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안) (9월 3일)

※ 자세한 기사, 그 밖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지적재산뉴스』를 참조해 주십시오.

전자지문을 활용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개시

(문서원본 및 존재시점증명서비스의 도입)

《 영업비밀의 존재 증명 》

기술 노하우와 기밀데이터를 기록한 전자문서가 복제되어 회사 밖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영업비밀 누설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치로 대항하는 제도는 한국에도 정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유출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전자문서의 작성일시에 「고의적 조작」은 없는지? 전자문서에 기록된 기술정보는 정말 그 작성일시 시점에 기록된 내용인지?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닌지?) 기업이 기밀로 하고 있던 정보인 만큼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문서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하여 기술정보 등 기업의 영업비밀의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의 실체자료(전자문서)는 자신·자사가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KIPI)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 및 원본 여부를 증명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유한 영업비밀의 정보자재를 제공할 필요 없이 증명 받고자 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이를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점과 함께 서비스이용과정에서의 정보 누설 우려가 없어 정보누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쉽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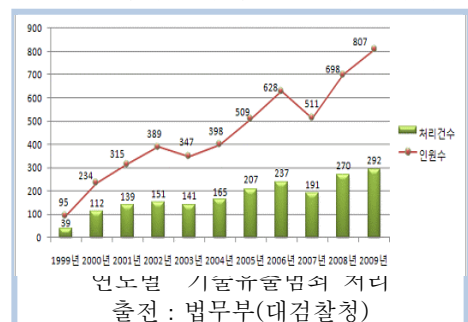
특허제도는 기술개발의 결과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기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특허제도만으로는 기술정보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특허로 등록 받기에는 부족한 기술개발 정보라든지, 처음부터 외부에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기술정보는 특허제도로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간극을 채워주는 것이 영업비밀 보호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영업비밀 보호제도 또한 실무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1)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기술 개발을 특정 시점에 완성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2)그 기술정보에 대해 적절한 비밀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지만 이것을 입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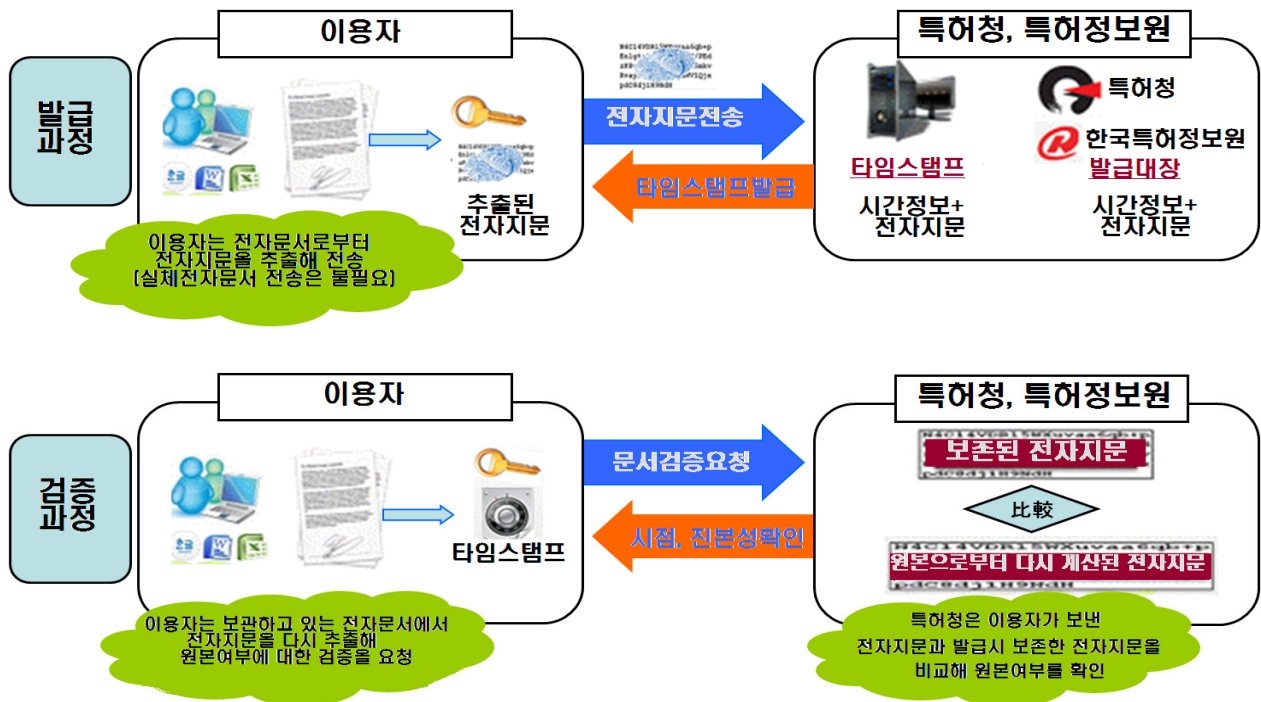
■ 서비스 이용법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저비용으로 기술정보 보유사실 및 그 시점에 관한 공식적인 인증을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①이용자가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자료(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을 KIPI 로 송신하면 KIPI 로부터 타임스탬프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②이 전자지문과 타임스탬프를 사용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한 시점 및 원본여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이 서비스는 KIPI의 홈페이지 URL : <http://www.trade-sec-ret.or.kr>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일본기업 여러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의 「공인인증」이 필요). 이용요금은 1건당 3만 원(약 2200 엔)이며 할인제도에 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타임스탬프 발급 · 검증 과정



※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에서 추출된 고유 코드로, 전자문서로부터 난수를 생성하는 수법에 의해 생성된 「HASH 값」이 사용됩니다. 전자문서가 조금이라도 수정되면 전혀 다른 지문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지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타임스탬프 시스템이란 전자문서가 특정 시각에 존재했었다는 것과 그 시각 이후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 원본증명서비스의 다양한 활용법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가 중요한 선발명주의 국가(미국 등)에 특허출원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발명노트 작성 시점의 설정을 미리 원본증명서비스로 받아두면 자사에서 발명한 날짜를 간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개발한 발명을 제삼자가 탈취하여 특허출원한 경우라도 기업은 시점과 내용이 확정된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 즉 제삼자의 출원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비교적 손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발명의 선후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먼저 특허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설령 A 라는 기술을 甲이 먼저 발명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먼저 A 기술에 관하여 특허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면, A 기술에 관한 특허권(독점적인 사용권)은 乙에게 부여 되게 되고, 따라서 甲은 A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한국 특허법은 만일 甲이 乙의 위 출원 당시 이미 A 기술을 실시하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甲은 乙의 허락 없이도 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 甲의 사업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 103 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없는 甲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甲은 乙의 출원 시점에 이미 甲이 A 발명을 이용하여 사업하고 있었다(또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甲이 평소에 위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甲의 A 기술 발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노트, 제품 개발서, 사업화 계획서 등의 원본 생성 시점을 설정을 받아 둔 바 있었다면, 甲은 간단하게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고는 우측 협력회원으로부터 The Daily NNA 【한국판】에 연재중인 <신 · 지적채전선은 지금>을 위해 기고해주신 해설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해설자 : 한국 IPG 협력회원>

특허법인가산 김국현 ·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약사
1964년 출생. 서울대학약학석사, Franklin Pierce Law Center (New Hampshire, U.S.A.) 지적재산권법석사, 93년 변리사시험합격 후 변리사로 근무. 2000년 사법시험합격. 주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 저서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감수: JETRO 서울센터榎本吉孝(에노모토 요시타카))

포르노와 저작권과 무차별고소

File No. 24

작년 미국의 포르노 영화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한국 인터넷 이용자 1만 명이 일제히 고소당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사람 수가 수 만 명을 넘지만 이 사건은 업로드된 것이 한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이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한국사회지만 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 그리고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 등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과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을 생산·유통시킨 자(복제·공중송신·배포 등)만을 처벌하고, 구입·소비한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법복제 음반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지만 그것을 사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작물의 소비자일 뿐, 재생산과 유통을 담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일반인들을 저작물을 생산·유통시키는 주체로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식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는 P2P 사이트나 파일교환 소프트웨어, 웹하드 등을 이용한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불법 다운로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진보한 결과, 누구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제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한 복제자는 권리를 지키려는 저작권자로부터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만, 한국에서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저작권 침해 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싶지 않은 복제자는 저작권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에 의한 고소 취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도 관련됩니다. 회사 지시에 반해 사원이 마음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회사 컴퓨터(PC)에 다운로드 하거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서(또는 라이선스 수를 초과한 대수의 PC에 인스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자와 관청의 일제 단속에서 발각되어 회사가 고소당하는 일이 일본계 기업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화해와 고소취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금(또는 그 성공보수)을 노리는 일부 저작권자와 변호사들에 의한 대량 고소와 그에 따른 거액의 합의금 요구가 빈발해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미성년자들도 대상으로 삼은 무차별적 고소도 발생해 고등학생이 합의금 마련에 고민하다가 끝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일본의 JASRAC에 해당)의 내부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수천~수만 원이지만, 저작권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은 수십만~수백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권리자라 할지라도 「일단 고소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면 취하」하는 흐름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 측으로서는 불법복제를 하지 않는 것, 기업은 사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자살, 교육으로 저지

수사기관 측도 미성년자의 자살 등과 같은 사태를 두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조범인 미성년자에 한해 불기소」 제도와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에서의 저작권교육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계몽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삼진아웃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르노영화 업로드사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을까요? 포르노는 한국 법률에서는 불법영상물이지만 미국 법률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작권법과 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도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단을 일단 제시하면서도 해외 포르노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수사는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합치되지 않고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사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해설자: 한국 IPG 협력회원>

특허법인태평양 이후동 대표변리사·변호사

1964년 출생. 85년 사법시험합격. 91년부터

법무법인태평양에서 지재권·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일본계 기업의

법률문제에서 폭넓게 활약 중. 98년 도쿄대학에서

법학석사 취득. 02~07년 도쿄에서 태평양외국법

사무변호사사무소를 개설.

(감수: JETRO 서울센터 榎本吉孝(에노모토 요시타카))

<<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

